

1. 개정이유

2023년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호주가 2019년 8월 26일 및 2023년 2월 28일 통보한 바에 따라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추가하는 등 자유무역협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변경(안 별표 3)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2017) 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별표3)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상 품목번호를 2017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기준으로 변경함.

나.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안 제8조제6항)

호주측이 2019년 8월 26일 및 2023년 2월 28일 통보한 바에 따라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및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를 추가함.

다.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정비(별지 제22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협정문과 일치하게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11. ~ 5.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를 “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및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4. For Official Use란 중 각 항목의 “Preferential”를 각각 “Preferential Tariff”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23. 06. 0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3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 아이슬란드공화국, 스위스연방(리히텐슈타인공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노르웨이왕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물품
-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뿔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과 역내국의 영해에서 어로에 따라 획득한 물품
- 5)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및 그 밖의 물품
- 6)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그 영해 밖의 해저나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 7)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 9)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두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 1)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유럽자유무

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5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물품 및 원산지 인정요건은 제3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은 같은 호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 또는 가공 등을 말하며 비원산지재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 2) 제3호의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물품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를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재료로 사용되는 물품과 이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체약당사국내에서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를 불문한다)

다. 원산지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체약당사국에서 이 표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된 재료로만 획득된 물품은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2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라.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 1) 나목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에 수입되어 최종적으로 생산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비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역외가공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는 수출하기 전에 가목에 따른 원산지물품의 인정요건을 충족하거나 마목에 따른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칠 것

- 2) 1)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따른 물품 중 체약당사국이 수출한 재료를 역외가공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가)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 3) 2)가)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계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계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계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4) 1) 및 2)에도 불구하고 역외가공물품이 제3호에 따른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제2호나목에 따른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의 적용에 의하여만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마.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나목 및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녹·기름·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섬유류 제품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마)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바)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표백·광택 작업

사)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 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카)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타)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파)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하)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둘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마)·타) 및 파)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

하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 3) 1)가)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은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제1호마목의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이하 이 표에서 "단순작업"이라 한다) 이상을 거쳐야 한다.
- 2)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이하 이 호에서 "최초수출국"이라 한다)로 하는 물품이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후 원상태 또는 단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최초 수출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본다.
- 3) 2)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국 이상의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둘 이상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사용된 경우로서 그 물품이 단순 작업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체약당사국으로 수출된 때에는 과세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다만,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물품을 수출한 체약당사국에서 지급한 재료의 가격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재료의 원산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 4) 1)부터 3)까지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 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 1)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 및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물품은 그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와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3)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이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기초섬유재료의 총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 4) 1)부터 3)까지는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부가가치의 비율} = \frac{\text{비원산지 재료의 가격}}{\text{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 \times 100$$

라. 재료가격의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연료 및 에너지
- 2) 공장시설 및 장비(그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를 포함한다)
- 3) 공구·금형·다이스(Dies) 및 기기(器械)
- 4) 그 밖에 해당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

정할 수 있다.

-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 3) 재고물품관리법은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 4)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 5)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6)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이 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아.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계약당사국에서 계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계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할 것
-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할 것

자.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차.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 관련)

품목번호(HS2017)	원산지 인정요건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1류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하게 획득되어야 함.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2류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01 0302 0303 0304 0305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어야 하는 생산
0306 0307 0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훈제한 것: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기타: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어야 하는 생산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제4류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0502 0504 0505 0506 0507 0508	사용된 제1류와 제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0510	
0511.10	사용된 제1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0511.91	사용된 제1류, 제3류 및 제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0511.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말의 털,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와 동물성의 해면: 사용된 제1류와 제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2. 기타: 사용된 제1류, 제3류 및 제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6류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제7류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8류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0901.11 0901.12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0901.21 0901.22 0901.90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0902 0903 0904 0905 0906 0907 0908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0909	
0910	
제10류 곡물	
제10류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1102 1103 1104	제10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105	제7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106	제0708호, 제0710호, 제0713호, 제0714호 및 제8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107	제10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108	제7류 및 제10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109	제10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2류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제13류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14류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3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501 1502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15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4	생산품의 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15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6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1516	사용된 제2류, 제5류 및 제1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1517 1518 1520 1521 1522	사용된 제2류, 제4류, 제5류 및 제12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1602 1603	사용된 제2류 및 제5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1604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1605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12 1701.13 1701.14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701.91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1701.99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702 1703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7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1802 1803 1804 18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8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제0401호부터 제0406호까지, 제10류 및 제11류, 그리고 제3501호 및 제3502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902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10류 및 제11류(제1001호 및 제1101호는 제외한다)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1903	사용된 제10류 및 제11류(제1001호 및 제1101호는 제외한다)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1904 19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0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102 21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104.1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104.2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1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106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22류 음료·주류·식초	
2201	사용된 제2201호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220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203 2204 22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206	제0808호 및 제2009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207 2208 220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10	제2류 및 제5류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301.20	제3류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309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10류, 제11류 및 제16류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사용된 제24류의 모든 재료가 완전하게 획득되는 생산
2402	제2403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4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5부 광물성 생산품	

제25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8.1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8.2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8.3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8 2529 253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26류 광(鑛)·슬래그(slag)·회(灰)	
제26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27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제27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8류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 이나 무기화합물	
제2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9류 유기화합품	
제2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0류 의약품	
3001 3002 30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0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3003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0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006.10 3006.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006.30 3006.40 3006.50 3006.60 3006.70 3006.91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006.92	본래 세번 분류에 따른 생산품의 원산지가 유지됨.
제31류 비료	
3101 3102 3103 3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3102호부터 제3104호까지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2류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제3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제33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 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제34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5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01 3502 3503 35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5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1108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50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3501호, 제3503호 및 제3505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506.91 3506.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5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6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제3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7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3702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7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3701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7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7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3701호부터 제3703호까지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705 3706 37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38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3802 3803 38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805 3806 3807	
3808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809.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1108호와 제3505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809.91 3809.92 3809.93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810 3811 3812 3813 3814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815 3816 38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818 3819 3820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8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8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823.11 3823.12 3823.13 3823.1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823.70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3824 38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38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3824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4002 4003 40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0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천연고무는 제외한다)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4006 4007 4008 4009 4010 401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012.11 4012.12 4012.13 4012.19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012.20 4012.90	제4011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013 4014 4015 401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0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경질고무의 제품: 경질고무로부터의 생산 2. 기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8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4102 41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104 4105 4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유연처리된 가죽의 재유연처리 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107 4112 4113 411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115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2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43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4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4402 44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제4401호 및 제4403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텃(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2. 기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417 4418 4419 4420 442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45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450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503	제4502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5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제46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제47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제47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48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제48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909	제4911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4910 491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11부의 주석> 이 부에서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란 정련(scouring), 표백(bleach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열고정(heat setting), 기모(raising), 캘린더링(calendering), 방축가공(shrink resistance processing), 영구가공(permanent	

finishing), 데커타이징(decatizing), 침투(impregnating), 보수(mending), 실밥제거(burling)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제50류 견	
5001 5002 50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004 5005	제5006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006	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51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5102 5103 5104 51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106 5107 5108	제5109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109	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11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111 5112 5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52류 면	
5201 5202 5203 5204 5205 5206 52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208 5209 5210 5211 5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5302 5303 5305 5306 5307 530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309 5310 5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54류 인조펠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5402 5403 5404 5405 5406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4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5408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1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512 5513 5514 5515 55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56류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6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7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제58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590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9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9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9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9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59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908 5909 5910 591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60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제60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수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 작업. 다만, 사용된 날염 또는 염색되지 않은 직물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당사국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6115 6116 6117	제60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당사국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당사국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6213 6214	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제5903호, 제5906호부터 제5907호까지는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당사국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6215 6216 6217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당사국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 제품, 넘마	
6301 6302 6303 63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당사국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2. 자수.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생산품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6305 6306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당사국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6307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6308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 구성품에 적용될 규정을 충족해야 함. 그러나 비원산지 구성품의 총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될 수 있음.
6309 6310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당사국에서 재단과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어야 함.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4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65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제65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66류 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6602 66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67류 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제67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3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 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제68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69류 도자제품	
제69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7002 7003 7004 70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006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007 7008 7009	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지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010 7011 7013 7014 7015 7016 7017 7018 7019 702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4부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	

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7102 7103 7104 7105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7106호, 제7108호 및 제7110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3.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의 귀금속의 상호간 또는 비금속(卑金屬)과의 합금
71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7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7106호, 제7108호 및 제7110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3.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상호간 또는 비금속(卑金屬)과의 합금
7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7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7106호, 제7108호 및 제7110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전해, 열 또는 화학적 분리 3. 제7106호, 제7108호 또는 제7110호 귀금속의 상호간 또는 비금속(卑金屬)과의 합금
71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7112 7113 7114 711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116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7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711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제72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73류 철강의 제품	
7301 73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73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304 7305 73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7307 7308 7309 7310 7311 7312 7313 731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315.11 7315.12 7315.19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315.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7315.81 7315.82 7315.89 7315.90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316 7317 7318 7319 7320 7321 7322 7323 732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325	
7326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제74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제75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602	
76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	
7610	
7611	
7612	
7613	
7614	
7615	
7616	
제78류 납과 그 제품	
제78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79류 아연과 그 제품	
제79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80류 주석과 그 제품	
제80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제8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

	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8202 8203 8204 820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8206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그러나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구의 총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공구는 세트에 포함될 수 있음.
8207 820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8209 8210 8211 8212 8213 8214 8215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제83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01 8402 8403 8404 8405 84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07 8408 8409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10 8411 8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13 8414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15 8416 8417 8418 8419 8420 8421 8422 8423 84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25 8426 8427 8428 8429 8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431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8 8439 8440 8441 8442 84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44 8445 8446 844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448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48 8449 8450 8451 8452 8453 8454 845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56 8457 8458 8459 8460 8461 8462 8463 8464 846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466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66 8467 846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70 8471 847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73 8474 8475 8476 847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478	
8479	
8480	
8481	
8482	
8483	
8484	
8486	
8487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503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501호 및 제8503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04	
8505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14	
8515	
8516	
8517	
8518	

8519 8521 8522 8523 8525 8526 8527 8528 8529 8530 8531 8532 8533 8534	
853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538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36.10 8536.20 8536.30 8536.41 8536.49 8536.50 8536.61 8536.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538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36.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플라스틱 커넥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2. 기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8536.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538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3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8538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38 8539 8540 85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42.31 8542.32 8542.33 8542.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또는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2. 기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4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4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44 8545 8546 8547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48.10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548.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2. 기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6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8602 8603 8604 8605 8606 86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6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6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1 8702 87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

8704 8705	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706 8707 8708 87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7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볼베어링(ballbearing)이 없는 이륜자전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제8714호는 제외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713 87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7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7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8류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01 8802 8803 88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88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제8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9002 9003 9004 90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90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007 9008 9010 9011 9012 9013 9014 9015 9016 90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9018 90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9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9021 90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9023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0 90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9032	
9033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1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92류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제9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19부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3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9402 9403 94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9405 9406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504 9505 9506 9507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9508	
제96류 잡품	
9601 960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96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비·브러시(마당비와 이와 유사한 것, 담비털이나 다람쥐 털로 만든 브러시는 제외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모프(mop):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나.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2. 기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9604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9605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그 구성품에 적용될 규정을 충족해야 함. 그러나 비원산지 구성품의 총 가치가 그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될 수 있음.
960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607 9608 9609 9610 9611 961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9613	1. 압력식 점화 라이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기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9614 9615 9616 9617 9618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9619 96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생산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제97류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제97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7년 1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라목 관련)

품목번호(HS2017)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제3907.10호, 제3907.20호, 제3908.10호, 제3910.00호, 제3921.13호, 제3923.10호, 제3923.30호, 제3923.50호, 제3923.90호, 제3926.90호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제4016.99호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202.11호, 제4202.12호, 제4202.21호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제6101호부터 제6103호까지, 제6104.19호, 제6104.29호, 제6104.31호, 제6104.41호부터 제6104.69호까지, 제6105호, 제6106호, 제6109호, 제6110호, 제6112.11호부터 제6112.41호까지, 제6114호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제6201호, 제6202호, 제6203.11호부터 제6203.41호까지, 제6203.43호, 제6203.49호, 제6204호부터 제6210호까지, 제6211.11호부터 제6211.32호까지, 제6211.39호부터 제6211.49호까지
제64류 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제6402.99호, 제6403.99호, 제6404.11호, 제6406.10호

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제7015.90호
제71류 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17.19호, 제7117.90호
제73류 철강의 제품
제7323.93호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제8109.90호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제8207.30호, 제8213.00호
제83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제8302.30호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제8409.91호, 제8413.30호, 제8415.10호, 제8415.82호부터 제8415.90호까지, 제8421.23호, 제8421.31호, 제8421.39호, 제8424.10호, 제8424.20호, 제8424.90호, 제8443.99호, 제8487.90호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제8504.31호, 제8512.20호, 제8517.70호, 제8529.90호, 제8534.00호, 제8536.30호, 제8536.50호, 제8536.69호부터 제8536.90호까지, 제8539.29호, 제8540.91호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제8709.90호, 제8714.99호
제90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26.90호
제91류 시계와 그 부분품
제9101호, 제9102.11호부터 제9102.19호까지, 제9102.29호부터 제9102.99호까지, 제9103호부터 제9114호까지
제96류 잡품

제9616.10호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7년 1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와 <u>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u> 로 한다.	⑥ ----- ----- ----- ----- ----- ----- <u>호주산업협회(Australian Industry Group, AiG), International Export Certification Services 및 Trade Window Origin Pty Limited</u>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